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0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08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5. 1. 8.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취득세 79,531,150원, 농어촌특별세 7,953,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0

가. 원고는 [redacted]군 B 6층에 위치한 C 주식회사(2010. 8. 24.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70,000주 중 35,00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8. 9. 3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1,500주의 주주로 추가로 등재되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6,500주(전체 주식의 9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3. 9.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점주주 성립시점인 2008. 9.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9,531,150원, 농어촌 특별세 7,953,1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 31. 기각되었고, 2014. 1. 2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역시 2014.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감사인 E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로서 위 주식을 원고와 F에게 명의신탁 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0

두었다가 F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회사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바,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0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1997년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년경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70,000주 중 35,00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8. 9. 30. E의 친동생인 F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1,500주의 주주로 추가로 등재되었던 점, ③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왔는데, 부모님이 안계시다는 사정을 듣고 학비를 조금씩 대주었고, 이후 원고를 수양딸로 삼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다. 1997년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자신이 원고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맡아두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는 실제 대표인 E이 모두 맡아 진행하였으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E이다. 제3자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가 채무가 상환되지 않아 결국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이후 E이 자신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이전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0

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F 역시 원고 또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임직원 급여 수령 계좌 목록에도 원고의 계좌가 없었 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직원명부 및 출퇴근명부에도 원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E이고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박원철

판사 정혜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0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0

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